
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서류안내

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검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O		신분증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청약자(본인)	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주택공급계약 체결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불가
	O		주민등록표등본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O		주민등록표초본	청약자(본인)	인적사항변경내용,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명/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O		혼인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O		출입국사실증명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,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O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		O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,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	O	해외체류 증빙서류	청약자(본인)	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		O	출입국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	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'Y'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		O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과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확인
		O	한부모가족증명서	청약자(본인)	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	O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'상세'로 발급 ※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	O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-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를 포함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	O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청약자(본인)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[임신진단서 이외 불가]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O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[주택전시관 비치] 임신의 경우
		O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자녀가 입양의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O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위임용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
	O		위임장	-	주택전시관 비치(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/ 인감증명서와 대조)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O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당첨사실 소명자료	해당서류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합니다. ※ 서류 접수 시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여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해당됩니다. 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 또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